

지 방 공 기 업 평 가 원 출 연 동 의 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934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컨설팅 지원 등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사 무 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다.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라. 출연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 공기업평가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

마. 주요사업 내용

- 지방공기업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 지방공기업(광역+기초)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등 수행
- 지방공기업·출연기관 컨설팅 지원
- 지방공기업 설립·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법정전담기관)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임직원 전문교육

바. 출연대상 기관개요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
- 법인설립 : 1992. 3. 2.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법정기관 전환('16.6)
- 조 직 : 1본부 1실 2센터 / 정원 49명 ※현원 40명
 - 이사회 구성 : 이사 11명, 감사 1명 * 서울시 기획조정실장(당연직이사)
- 시설현황 : 건물(지상6층) 연면적 2,550 m^2 , 부지 640 m^2

○ 위치도



청사현황



위 치 도

사. 소요예산(안)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산출근거 : 경상운영비(기본급) 60,000천원,
시·도등 지원사업비 18,000천원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하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지방공기업평가원

- 재단법인 형태의 지방자치경영협회로 출범(1992년)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하 “평가원”)은 2016년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교육연수 등의 전문기관으로 법정기관화 되었음(제78조의4).
- 평가원은 현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진단·컨설팅, 경영사업 지원,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와 임직원 교육훈련, 고객만족도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조직은 1실 1본부 2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12명, 직원 38명에, 전문연구인력 380명(상근연구인력, 자문위원 경영평가단 등)으로 편성 되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조직도〉



※ 자료 : 지방공기업평가원 홈페이지(2019.8월 기준)

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 2015년 행정안전부의 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과거 연구용역비로 지급하던 공기업평가 관련 비용 대신 재정력지수(50%)와 공기업수(50%)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정비율의 출연금을 매년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2017년부터는 지방공기업도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납부하고 있음.
- 평가원의 전체 수입예산 136억원(2018년) 가운데 출연금은 40억 2,180만원이며, 자체 사업수입은 93억 9,581만원임.

- 전체 출연금 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0억원 수준이고, 나머지 30억 이상을 지방공기업이 부담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에 1억 2,500만원을 출연한 이후 4년 연속으로 7,8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2020년에도 동일하게 출연할 계획임.

〈서울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안)
125	78	78	78	78	78

- 서울시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임직원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인력(25명)의 인건비 6,000만원과 시·도 등 지원사업비 (정책연구, 컨설팅, 발전사업) 1,800만원으로 집행될 계획임.

〈2020년도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세부산출 내역(개략)
계	78,000	
경상운영비	60,000	
인건비	60,000	
기본급	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000천원 * 5% (전문직 25명) 지방공기업·출연기관의 정책 개발 및 연구지원, 경영평가, 컨설팅지원, 임직원 전문교육 전문인력(25명) 인건비
시도등 지원사업비	18,000	
정책연구	4,000	• 연구보고서 인쇄비, 회의비, 포럼 등
컨설팅	6,000	• 외부전문가 보상비, 회의비 등
발전사업	8,000	• CEO 및 신규자 무료교육 등

- 최근 3년간 평가원의 서울시 관련 추진사업을 보면,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 연구와 전문교육 등을 수행하였음.

〈최근 3년간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서울시 출연금과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연도	출연금 규모	시도 출연내역	서울시 출연내역	주요사업 및 추진실적
'17	4,078	1,008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 상수도본부,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정책연구 선정·수행(서울시) : 지방공기업 부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 컨설팅(서울시) : 에너지공사, 강북구·용산구·노원구·동대문구·동작구·강서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하수도 ○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18	4,024	1,014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지방공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133개 과정) ○ 컨설팅(서울시) : 에너지, 종로문화재단, 강동·광진·용산·금천·마포·동작·중랑·강서·성동·서대문구 시설공단, 세종문화회관, 연구원, 50플러스재단, 신용보증재단 ○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확대·강화
'19 상반기	4,227	1,020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서울시) 상수도본부, 교통공사, 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주택도시공사, 에너지공사, 자치구(시설공단) ○ 역량강화 전문교육(서울시 무료교육) 10개 과정 374명 ○ 컨설팅(서울시) : 양천구·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의료원 ○ 지원사업 확대·강화(실무협의회, 정기간행물 배포등)

-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르면, 평가원에 대한 지방 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안은 매년 7월 31일 까지 평가원 이사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고, 이를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출연금 요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해당 지방의회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출연금요구서 제출시기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기, 출연의 의회동의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요구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회가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②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전에 출연금 징수 및 사업추진 실적, 다음 연도 사업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평가원은 제4항에 따라 확정·통지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자금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평가원은 출연금을 평가원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평가원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운영자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⑧ 평가원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출연금 지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